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10 선고 2021가단709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피 고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사이트

담당변호사 노준철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2021. 3. 1.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H 주식회사(대표이사 I)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 D, E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아래와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	근무기간	채불임금(원)	채당금 수령(원)	미지급 임금액(원)
B	2017. 10. 23.~2019. 7. 31.	21,106,031	14,000,000	7,106,056
C	2018. 4. 2.~ 2019. 7. 31.	22,050,625	13,662,030	8,388,595
D	2018. 6. 14.~ 2019. 7. 31.	15,276,219	12,600,350	6,565,194
E	2017. 12. 5.~ 2019. 6. 30.	15,276,219	10,823,470	4,452,760
합계				26,512,605

나. 소외 회사는 2019. 7. 3.경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49호로 법인 회생신청을 접수하여 2019. 8. 2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3.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생절차는 2020. 7. 7. 종결되었다.

다. 피고는 2021. 3.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의 소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임금채권을 가지는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임원의 보수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 A은 이를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회사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원고 A이 주장하는 보수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즉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B, C, D, E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소외 회사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위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H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는 자동차산업 불경기로 인한 매출액이 급감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49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20. 3.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회생절차가 2020. 7. 7. 종결된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무렵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를 변제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20. 4. 6. 소외 회사에 30,000,000원의 대여금을 입금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신규자금의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H 주식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그 이행기가 2020. 4. 30.으로 그 이행기 전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 30,000,000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소외 회사의 공동담보가 곧바로 감소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에 대여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로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숙희

별지